

# 카드뉴스 vol.3

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 
쉽고! 편리하게! 전달해 드려요.



## 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’에 대하여 알아보게요.

### 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’이란

**[정 의]**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

**[계상기준]** 소관부처 규정에 따라 인건비(인건비로 계상된 현물·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)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 
※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%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

**[집행기준]**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,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지급액의 7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
※ 일부 부처(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)의 경우 최대 지급률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연구비 집행담당자에게 확인



## 그럼, 연구수당과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을 알아보까요?



### Q. 연구수당은 증액이 가능한가요?

A. 연구수당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 할 수 없습니다.

### Q.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하나요?

A.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야 합니다.

### Q. 연구수당은 단독 수령이 가능한가요?

A. 연구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이 없는 1인 과제의 경우에만 단독 수령이 가능합니다.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단독 수령이 불가합니다.

### Q. 연구수당과 직접비 집행비율이 상관관계가 있나요?

A.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
연구수당 지급액 × (연구수당 집행비율 - 직접비 집행비율\* - 20/100)

* 직접비 집행비율	
* 통합 EZbaro 적용 사업	$\frac{\text{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} + \text{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}}{\text{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}}$ (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)
* 통합 RCMS 적용 사업	$\frac{\text{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}}{\text{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}}$

### Q. 연구수당에 대하여 더 궁금 하시다고요?

A. 사업별 집행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담당자 확인 : 연구정보시스템 > 연구과제현황 > 집행담당자 성명 및 전화